

鳥獸保護 및 狩獵에 關한 法律施行規則改正(案) 立法豫告

山林廳은 곰등 人工飼育野生鳥獸의 虐待行爲等 禁止內容을 명정하고 野生鳥獸의 輸入 및 人工飼育에 따른 事後管理上 制度的 未備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鳥獸保護 및 狩獵에 關한 法律 施行規則 改正案을 마련 立法豫告하였다.

○山林廳이 立法豫告한 鳥獸保護 및 狩獵에 關한 法律 施行規則 改正案을 보면

- 人工飼育許可申請時 飼育하고자 하는 鳥獸의 出處 및 輸入 許可用途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添附토록 하고
- 人工飼育鳥獸의 虐待行爲基準을 明確하게 함과 同時에 虐待行爲禁止等 監督權 行使內容을 具體적으로 規定하였

으며

- 輸入한 鳥獸로부터 繁殖된 鳥獸는 種鳥獸의 輸入許可用途를 승계받도록 規定하여 種鳥獸와 차대조수의 管理上 混線을 防止토록 하고
- 人工飼育許可證(申告필증), 輸入許可證 및 讓渡申告필증에 遵守事項을 新設하여 諸般 規定 遵守를 促求토록 하는 한편,
- 輸入鳥獸의 斃死申告書에 獸醫師의 診斷書 및 斃死前後光景寫眞을 添附토록 하였다.

○개정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◀ 改正事由

- 곰등 人工飼育 野生鳥獸의 虐待行爲等 禁止內容을 명정하고
- 野生鳥獸의 輸入 및 人工飼育에 따른 事後管理上 現行規定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

【主要改正內容】

現 行	改 正 (案)	改 正 事 由
○野生鳥獸人工飼育許可申請時 事業計劃書만 添附	○人工飼育許可申請時 飼育하고자 하는 鳥獸의 出處 및 輸入許可用途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 添附	○飼育鳥獸의 出處 및 輸入許可用途를 明確하게 把握管理
○人工飼育鳥獸의 虐待禁止等 具體的 內容없음	○人工飼育鳥獸의 虐待行爲基準, 監督權行使內容等을 具體적으로 規定	○人工飼育鳥獸의 虐待行爲 禁止等 監督強化
○輸入種鳥獸가 繁殖한 鳥獸의 用途 不明確	○輸入許可鳥獸로부터 繁殖된 鳥獸는 輸入種鳥獸의 用途를 승계받도록 規定	○用途를 指定輸入한 種鳥獸와 차대鳥獸의 用途等 管理上 混線防止
○人工飼育·輸入許可證 및 讓渡申告필증에 유의事項 未記載	○人工飼育·輸入許可證 및 讓渡申告필증에 遵守事項 新設	○許可 및 申告필증에 遵守事項 新設로 規定遵守促求等 效果舉揚
○輸入鳥獸의 斃死時 申告書만 提出	○斃死申告書에 獸醫師에 診斷書 및 斃死前後光景寫眞添附	○虐待行爲等 자의적인 斃死行爲 防止